# 2025년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
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 수혜기업모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하오니 해당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해당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2일 (재)광주테크노파크워장

### 1 지원개요

- [**사업명**]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
- **[사업기간]** 2025. 02. 01.(수) ~ 2026. 01. 31.(12개월)
- (공고·접수기간) 2025. 03. 12.(수) ~ 2025. 03. 31.(월)
- (모집대상)
  - 광주광역시 소재 7년이내 창업기업\*
    - \* 단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분야(23개 분야)에 한해 10 년이내 창업기업으로 함(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5조제4항)
  - 2023년, 2024년 본 사업 미수혜 기업(신규기업)
  -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
  -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

#### ☑ 제외대상

- 부도, 채무불이행, 법정관리,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
-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%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
-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기업
-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·지자체 사업 수혜자
- 해당 사업체(또는 사업장)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(본인·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)
-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

### ○ (지원프로그램)

- 기업별 최대 4인 이내 지원(우수인재 1인 이내, 우수경력자 3인 이내)

지원유형		자격요건	지원금액	모집규모
유형1	<del>우수</del> 인재 유치	- 2025년 신규 고용자(재입사자 제외) - 석박사 소지자 또는 관련기업(직무)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인재 직무는 개발·연구 등 기업 수요에 따름 ·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, 유망 ICT 산업 분야 기술자 등 우대하되, 경력근무에 따른 평가 점수 차등 적용 - (해당시) 역외인재 · 2024년 12월 31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광주 외 지역 거주자 ·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광주광역시로 거주(전 입알) 등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· 체제비 월 50만원 이내 지원(근로자에게 직접 지원) · 사업비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- 1인당 연봉의 70%의 인건비 지원 (연봉 3,500만원 이상 조건, 최대 연 3,500만원)	35백만원 이내	20명내외
유형2	우수경력자	- 광주 소재 창업기업(7년 이내)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·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 수로 2년이상 - 최근 2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	6백만원 이내	30명내외
		- 1인당 연 <del>봉</del> 상승분 지원 (최대 600만원)		

○ **(지원방법)** 선정된 수혜기업이 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

-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시 사업비 전액 환수

1차 지급		2차 지급	_	3차 지급
2025.06월	<u> </u>	2025.09월		2026.1월

※ 사업비 지급의 경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, 지급 시기와 사업비 집행일 (입금일)은 사업 수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# ○ [수행 프로젝트]

- 분야 : 제한없음
-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(우수인재) 및 기업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(우수경력자)
- ※ R&D, 디자인 개선, 마케팅, 조직관리, 재무관리, 투자유치(자금조달) 등

### ○ (채용 및 근무요건)

-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
- 지원 인력 광주광역시 내 거주 및 타 인건비 사업(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등) 중복 지원 불가 →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발급 확인

### ② 평가방법 및 기준

- **[평가방법]** 신청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
  - (예비진단)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
  - 적정성 및 중복성검토 : 국세(지방세) 체납, 국가R&D 참여제한기업(대표자), 부채비율 등
  - (선정평가)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  - ·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최고/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산출,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'지원 가능 대상'으로 분류하고, 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'최종 지원 대상' 선정
  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'성과 창출가능성'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
  -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
  - 예비 후보기업 선발 : 각 분야별 선발 인원의 30% 이내 예비 기업 선발 (기존 협약된 기업이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협약 종료시 잔여 사업비 환수하 여 사업비 잔액만큼 순위에 따라 예비기업 추가 지원)

## ○ **[평가기준]** 각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상이함

구분	항목	록	지표	배점	총점
	정량적	인재역량	◦인재의 역량 및 근무이력	10	
O 스 OI 제	정량적 평가 (30점)	기업역량	∘ 경영건전성		
			∘ 기업 신용도	10	
			◦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◦프로젝트 수행 동기 및 개선방향 도출 적정성 ◦인재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	20	
우수인재	정성정 평가 (70점)		│。사업계획의 구체성 │。제품(서비스)의 개발 추진 및 프로젝트 전략	15	100
	(70점)	5기 0점) 수행능력	○기업경쟁력 및 사업역량, 사업 추진능력 ○목표수립 및 성과창출전략의 구체성 ○기업 및 제품(서비스)성과 달성 가능성	20	
			◦ 사업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◦ 제품(서비스)의 상품화 가능성 및 성장성	15	
	정량적	인재역량	○ 인재의 역량	10	
	정량적 평가 (30점)	기업역량	○ 경영건전성	10	
	(30섬)	71870	∘ 기업 신용도	10	
우수 경력자	정성정 평가 (70점)	정성정 평가	◦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◦프로젝트 수행 동기 및 개선방향 도출 적정성 ◦인재의 역량과 프로젝트 분야 일치정도 및 적정성	20	
			◦ 사업계획의 구체성 ◦ 제품(서비스)의 개발 추진 및 프로젝트 전략	15	100
		(70점) 수행능력	○ 기업경쟁력 및 사업역량, 사업 추진능력 ○ 목표수립 및 성과창출전략의 구체성 ○ 기업 및 제품(서비스)성과 달성 가능성	20	
			◦사업 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◦제품(서비스)의 상품화 가능성 및 성장성	15	

### ③ **추진일정**

절 차	일 정	추진내용
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일체 (온·오프라인) 접수	2025.03월	(재)광주테크노파크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
⊕ 정량평가(1차) ⊕	2025.04월	인재의 역량 근무이력, 기업건정성, 신용도 등
선정평가(2차)	2025.04월	외부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
⊕ <b>선정결과 통보</b> ⊕	2025.04월	신청기업 평가 후 (E-mail/유선 통보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협약 체결	2025.04월~5월	협약추진
사업수행 및 중간점검/현장실태조사	협약일로부터 ~2025.12.31	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등
지원금 지급 (3회)	중간 및 최종점검 후	2025년 6월, 2025년 9월, 2026년 1월
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B 관리	지 <del>원종</del> 료 후 3년	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※ 상기 선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### ④ 제출서류

연번	제출	여부	서 류 명	제출부수	원본여부	비고
1		필수	<ul><li>○ 참여기업 신청서</li><li>○ 사업계획서</li><li>○ 기업현황 카드</li><li>○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서</li></ul>	원본 각 1부	원본	서식 1~4
2		필수	<ul><li>○ 사업자등록증</li><li>○ 법인등기부등본</li></ul>	각 1부	원본 및 사본	-
3	공통	필수	○ 최근 3년간 재무제표(21년, 22년, 23년)	1부	사본	-
4		필수	○ 4대 사회보험 사업장 - 가입 내역확인서 -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완납증명서	각 1부	사본	-
5		필수	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	원본	-
6	신청 분야별	필수 (유형1)	○ 유형 1(우수인재) -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확약서 - 석박사 증명 서류 - 근무한 경력 자료(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) 에시)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-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※덧붙임 참고)	각 1부	사본 및 원본	-
7		필수 (유형2)	○ 유형 2(우수경력자) - 신청인력의 근로계약서(2024년도, 2025년도) - 신청인력 프로젝트 참여 현황 -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※덧붙임 참고)	각 1부	사본 및 원본	-
8	선택	선택	○ 기타(특허, 수출, 연구소, 인증 등)	1부	사본	-

※ 제출한 서류는 보완 불가하며, 사전 요건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.

### ⑤ 문의 및 제출처

- 문의처 :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양한솔 선임(062-602-7227)
- 접수기간 : 공고개시일 ~ '25. 03. 31.(월) 16:00까지
-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 및 서류 접수(방문 혹은 우편)
  - ① 원본 서류 제출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원본 1부)
  - ② 스캔 파일 제출(PDF): 제출서류 순서대로 각 파일 저장 이메일 제출
- 제출처
  - 메일접수 : hansol@gjtp.or.kr
  - 우편(방문)접수 : (61008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(재)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 ※ 접수기간 내 도착 必

### 6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(지원 제한)
  -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,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(각 종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중인 경우
 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  - 법인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지원 된 기업
  -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
    - 기업의 부도
  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  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 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미반영" 또는 "부정적"인 경우
    - 자본 전액잠식
 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,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
#### ○ (지원 취소)

-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, 주관기 관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
-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
-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
-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

### ○ (인력 제한)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 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신청기업의 대표(사업주), 대표(사업주)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등기이사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< 친족관계>

- 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】 1. 6촌 이내의 혈족. 2. 4촌 이내의 인척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  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### 덧붙임

###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(예시)

